

지방재정 손실비리 방지를 위한 보조금 지원 시설 특정감사 결과보고(상반기)

감사 목적

- ▶ 5대 핵심분야의 하나인 지방재정 손실비리 특정감사
- ▶ 민간보조 단체(시설)의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지도·점검 및 감사를 통해 향후 보조금 관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반부패 운동의 민간 확산을 도모.

I 감사 개요

1 감사 근거

-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자체감사의 종류)
-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의5(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
- ☐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체감사규칙」 제5조(감사의 종류 및 실시 주기)
- ☐ 2016년 감사 종합계획 [감사실-6362(2015.12.18.)]

2 감사 배경

- (‘14. 8. 21) 부정부패 척결 ‘시·도 감사관 회의’ 개최
 - ▶ ‘부정부패 척결 추진계획’ 시달
- (‘14. 8. 28) 부정부패 척결 관계자회의 (군·구 감사관 회의)
 - ▶ 「새로운 인천, 행복한 시민」을 위한 부정부패 척결 추진계획 시달
- 2016년도 감사종합계획에 의거 보조금지원시설(단체) 감사 정례화

3 감사 실시 개요

- 감사기간 : 2016. 4 .18. ~ 5. 19. (3개소 12일간)
- 감사대상 : 연 2억원 이상 민간경상(행사)보조금 지원 단체(시설) 보조금 집행실태 (최근 2년간)
 R. ○○○○○ · ○○○○○○○○○센터, ◇◇◇◇◇◇◇◇, ▲▲▲▲▲▲▲센터
- 감사장 : 연수구 상설감사장(3층) 및 수감기관 사무실
- 감사대상 사무
 - 보조금 지원의 적정성 및 합법성
 - 보조금 집행 및 관리 실태
 - 공공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
- 감사반원 : 감사담당 등 3명

4 감사 대상기관 현황

구 분	직원 현황	시설장	위 치	2016년 예산현황 (천원) (국비 : 시비 : 구비)	설립일
◇◇◇◇◇◇◇◇	5명	☆☆☆	청솔로 51	313,996 (5,600 : 308,204 : 192)	1970.5.16
○○○○○·○○○○○ ◎ ◎ 센 터	19명	○○○	청능대로 109호 4층	1,114,917 (682,578 : 214,071 : 218,268)	2010.5.20
▲▲▲▲▲▲ 센 터	7명	□□□	청학로 16번길 56	402,736 (0 : 201,368 : 201,368)	2007.10.30

1 지적사항 총괄

구 분	처분 현황	행정상조치(건)			재정상조치(천원)		신분상조치
		시정	주의	개선	계	회수·추징	
계	18	9	8	1	2	800 회수 1,541 추징	
◇◇◇◇◇◇◇◇	6	3	3				-
○○○○○○○○○○ ◎ ◎ 센 터	6	4	2		2건	800 회수 1,541 추징	-
▲▲▲▲▲▲ 센 터	3	1	2				-
사 회 복 지 과	3	1	1	1			-

2 지적사항 목록

□ ◇◇◇◇◇◇◇◇

연 번	지 적 사 항	처분내역			비 고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1	법인과 시설 회계 혼용(시설의 고유번호증 미신청)	시정	-	-	
2	후원금 용도 외 사용 및 기관운영비 집행부적정 (2건 100,000원 입주세대 조의금 지출)	주의	-	-	
3	계약 및 회계 절차 부적정 (하자보증금 지급각서 미장구 등)	시정	-	-	
4	물품 구입 시 연회비 납부 등 불필요한 예산 집행	주의	-	-	
5	대금지급 시 세금계산서 미발행	시정	-	-	
6	대인·대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부적정 (보험 미가입기간 : 63일)	주의	-	-	

□ ○○○○○ · ○○○○○○○○센터

연번	지적사항	처분내역			비고
		행정상	재정상(천원)	신분상	
1	기관운영비 집행 부적정 - 경조사비, 명절선물 명단 없음, 주점에서 집행 등	시정	800 환수	-	
2	운영비 집행 부적정 및 회계처리 절차 미비 - 물품내역과 용도 확인 불가, 카드전표 서명 등 누락	주의		-	
3	비효율적인 워크숍 진행	주의		-	
4	세출예산 편성 부적정 - 운영위원회 수당을 기관운영비로 편성	시정		-	
5	책임보험 미가입 - 이용자 안전 미확보	시정		-	
6	강사료 원천징수 미이행 (29명 강사료 39,010,000원)	시정	1,541 추징	-	

□ ▲▲▲▲▲▲센터, 사회복지과

연번	지적사항	처분내역			비고
		행정상	재정상(천원)	신분상	
1	기관운영비 집행 부적정 - 유관기관이 아닌 곳 집행, 증빙서류 미첨부 등	주의	-	-	
2	세출예산 회계과목 집행 및 편성 부적정 - 자산취득비를 수용비로 집행 등	시정	-	-	
3	후원금 집행 및 사용내역 통보 부적정	주의	-	-	
4	▲▲▲▲▲▲센터 직원 배치 운영 부적절(사회복지과)	개선	-	-	
5	예산편성 및 회계 관리 지도·감독 소홀(사회복지과)	주의	-	-	
6	화재보험 중복가입(사회복지과) - 시설, 구청에서 중복 가입(가입사실 안내 소홀)	시정	-	-	

III

주요지적사항

■ ◇◇◇◇◇◇◇◇

1. 시설의 고유번호증 미신청 및 법인과 시설 회계 혼용

- 「2016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세무행정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각 시설 별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도록 되어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6조에 의하면 법인의 회계는 법인회계, 해당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시설회계 및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시설의 회계는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로 한다고 규정 되어 있다.
- 그러나 ◇◇◇◇◇◇에서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고유번호 증의 신청 없이 기존 법인명으로 통장을 개설하여 회계처리를 하였으며 법인과 시설의 회계를 혼용하여 관리하였다.

▶▶ 처분요구 : 행정상 시정

2.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 및 기관운영비 집행 부적정

- 「2015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지침에 따라 후원자가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후원금에 대해서는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다만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하며, 간접비 중에서도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로는 사용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규칙」 별표4호 시설 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에 의하면 기관운영비는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의 업무협약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로 사용되며 시설 내 입소 세대주 경조사비 지출은 불가하다.
- 그러나 ◇◇◇◇◇◇에서는 2015년 세대주 조의금 2건을 후원금에서 지출하여 후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3. 계약 및 회계 절차 부적정

- ◇◇◇◇◇◇에서는 시설누수보수공사 등 2건에 공사에 대하여 하자보증금 지급각서 등 하자보수 보증을 위한 서류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하자보증기간이 방수공사의 경우 3년임에도 1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의하면 계약의 대가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설배수로 및 방수공사대금 지출시 2015.9.5.일 청구되어 2015.9.15.까지 지급되어야 함에도 43일이 지난후인 2015.10.28.일에 지급하였다.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4. 운영물품 구입 시 연회비 납부 등 불필요한 예산 집행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기준」에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절감에 노력하여야 하며, 정상적 성격의 수용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토록 규정되어 있다.

○ 그러나 ◇◇◇◇◇◇에서는 운영물품 구입 시 관내에 다수의 마트 등 유통업체가 있음에도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에서 연 4~5회에 걸쳐 운영물품을 구입하여 차량운행에 따른 불필요한 지출하였으며, 연회비를 2015.11.19일에 3만원 납부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하였다.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5. 대금 지급 시 세금계산서 미 발행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에 의하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그러나 ◇◇◇◇◇◇에서는 2014년 1월부터 현재까지 정수기 관리비용을 매월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아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되지 못하였다.

▶▶ 처분요구 : 행정상 시정

6. 대인·대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부적정

- 「2016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은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므로 매년 대인·대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에서는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대인·대물 손해배상 책임보험이 2016.2.8.에 만료였으나, 지속적으로 가입하지 않고 2016.4.11에 재가입하여 63일간 대인·대물 손해배상 책임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있었던 사실이 있다.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 · ○○○○○○○○○센터

1. 기관운영비 집행 부적정

가. 직원 경조사비 집행에 관한 사항

- 「2014년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실무-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 규칙 중심으로」에 예산비목별 세부집행지침에 따르면 기관운영비는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로 축의·부의금품의 집행 한도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1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또한,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전달자와 최종수요자에 영수증을 징구하여 회계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 그러나 ○○○○○·○○○○○○○○센터에서는 직원 경조사비 지출시 건당 5만원을 초과하여 3회 470,000원을 집행하였고, 전달자와 최종수요자의 영수증도 첨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나. 명절선물 및 상품권 지급에 관한 사항

- 기관운영비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용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 그러나 ○○○○○·○○○○○○○○○센터에서는 직원 등 명절선물 구입시 4건 376,800원을 명단첨부 없이 지급하였으며, 명단도 없고, 명절선물 지급 대상이 아닌 인사위원에게 상품권 100,000원을 지급하였고, 직원 격려 선물로 3회 700,000원을 명단 및 지급사유의 명시 없이 집행하였다.

다. 기타 사항

- 기관운영비 집행 시 업무유관기관은 직접적인 업무연관성이 있고 상호간에 지속적으로 업무관계가 발생하는 기관으로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관에 한한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시 유흥, 퇴폐, 향락, 사행업종은 제외하고, 포지티브방식을 적용하여 업종을 선정하며 의무적 제한업종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 그러나 ○○○○○·○○○○○○○○○센터에서는 유관기관 방문 등 물품 구입 시 기관명과, 방문 목적 등의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5건 473,500원 집행하였고, 개소식 참석 시에는 초청장 등 관련 증빙서가 없으며, 기타주점으로 판단되는 ○○○○ 등 2개소에서 286,20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 처분요구 : 행정상 시정, 재정상 환수 800,000원

2. 운영비(수용비) 집행 부적정 및 회계 처리 절차 미비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별표2 법인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에 의하면 운영비(수용비 및 수수료)는 사무용품비, 인쇄비, 집기구입비 등에 집행하여야 하며,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무회계 규칙」 제5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제2항 규정에 의하면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 법규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센터에서는 운영비로 간식비 298,220원을 부적정하게 지출하였으며, 사무실 운영물품 구입을 명목으로 물품내역 확인과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인체리어 소품 구입 등에 3건 26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신용카드 사용 시 전표에 사용자 소속 및 실명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며,

(구 관련부서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

간담회 등으로 식사 제공시 인원, 사용 목적을 기재하지 않는 등 회계처리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3. 비효율적인 워크숍 진행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조(재무·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5년도 워크숍 실시계획에 의하면 직장 내 소통과 직원 역량 강화 등을 실시배경으로 한다고 하였다.

○ 그러나 ○○○○○·○○○○○○○○센터에서는 2015년도 3회 워크숍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2월에는 전직원 10명이 제주로 2박3일, 5월에는 중간관리자 6명이 제주로 5박 6일, 12월에는 직원 8명이 1박2일 참석하는 워크숍을 진행하였으며,

워크숍의 프로그램 내용과 일정 등에 업무에 관련이 되거나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내용이 거의 없이 관광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계획하여 당초 워크숍 목적에 맞지 않게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12월 영종도에서 실시한 워크숍은 2015.12.18.(금) 18시에 출발하여 12.19(토) 10:30에 출발하여 저녁식사 및 친목 도모를 위한 비용에 594,000원을 집행하였고, 2월과 5월에는 원거리로 비용이 많이 필요한 제주도에서 2회 실시하는 등 워크숍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집행과, 방만한 운영으로 건전한 회계 운영을 해치고 있다.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4. 세출예산 편성 부적정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별표2 법인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에 의하면 기관운영비는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로 사용되며 위원회 운영수당은 운영비(기타운영비)로 편성되어야 한다.

- 그러나 ○○○○·○○○○○○○○센터는 2016년도 예산편성 시 운영위원회 수당 1,000,000원을 기관운영비 과목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다.

▶▶ 처분요구 : 행정상 시정

5. 이용자 안전성 확보를 위한 책임보험 미가입

- 「○○○○지원센터 사업안내」에 따르면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에 적합한 규모 및 구조로 설비해야 하며, 화재 및 시설이용 관련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그러나, ○○○○·○○○○○○○○센터에서는 연수구 청능대로 109(탑피온빌딩) 6층에 설치한 교육장, 집단상담실, 프로그램실에 대한 시설이용 관련 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이행을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처분요구 : 행정상 시정

6. 강사료 원천징수 미이행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및 제129조(원천징수세율)에 의하면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100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공제한 금액에서 20/100의 세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며, 지방세법 제86조 및 제93조에 의하면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소득세액 10/100의 지방소득세분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에 의하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그러나 ○○○○·○○○○○○○○센터에서는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2014년 “○○○○ 강사료 지급비” 외 255건 29명 총지급액 39,010,000원의 강사료에 대하여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누락되었다.

▶▶ 처분요구 : 행정상 시정, 재정상 1,541,430원 추징

■ ▲▲▲▲▲▲▲센터

1. 기관운영비 집행 부적정

- 「2014년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실무-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예산비목별 세부집행지침에 따르면 기관운영비는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로 사용하며, “업무유관기관”은 직접적인 업무연관성이 있고 상호간에 지속적으로 업무관계가 발생하는 기관으로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관에 한한다.
- 그러나 ▲▲▲▲▲▲▲센터에서는 기관운영비 집행 시 지급대상이 아닌자에게 6건 300,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축하 난과 음료 3건 161,000원을 집행시에 그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미첨부하여 기관운영비의 사용처를 명백히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2. 세출예산 회계과목 집행 및 편성 부적정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별표2 법인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에 의하면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건물·그 밖에 자산의 취득비에 대하여는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기관운영비는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로 사용되며 위원회 운영수당은 운영비(기타운영비)로 편성되어야 한다.
- 그러나 ▲▲▲▲▲▲▲센터에서는 자산취득비로 집행하여야 하는 프린터 구입 등 비품구입비 8건 3,577,380원을 수용비로 집행하였다.
- 또한, [우편요금, 현수막 구입비 등 운영비로 집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관운영비로 6건 447,860원을 집행하였고, 위원회 운영 수당 14건 2,380,000원은 업무추진비(회의비)로 편성하여 집행하였다.

▶▶ 처분요구 : 행정상 시정

3. 후원금 집행 및 사용내역 통보 부적정

- 「2014년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실무」 후원금 관리(P113)에 따르

면 “후원금은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고, 가급적 적립·이월하지 않고 회계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후원금은 시설의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에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하며, 이때 간접비 사용 비율 50%는 당해연도 후원금 수입금액이 아닌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 ▲▲▲▲▲▲센터에서는 후원금을 집행함에 있어 2014년도에 접수된 후원금 2,102천원을 사용하지 않고 전액 이월하였으며, 비지정후원금이월금을 집행함에 있어 CMS수수료 지출과 개관7주년 기념행사에만 사용함. 특히 비지정후원금이월금 사용금액의 88.8%를 개관기념행사의 기념품 및 중식비 등 행사성 경비에 지출하였으며, 간접비 사용비율 50%를 초과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음. 또한 2015년도에 후원금 수입금액(이월금 포함) 7,394천원 중 28.9%인 2,139천원을 수용비 및 수수료, 시설장비유지비 등에만 집행하고 잔액 5,254천원을 이월함.
- 이와 같이 비지정후원금의 사용 제한 규정(간접비 사용 비율 50% 초과 금지)을 벗어나 후원금을 집행한 사실이 있으며, 후원금 사용을 위한 사업 연계 등의 노력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5(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 통보) 및 「2014년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실무」 후원금 사용내역 통보 및 결과 보고(P112)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연 1회 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 등을 이용하여 일괄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 ▲▲▲▲▲▲센터에서는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하거나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 등을 이용하여 일괄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사회복지과

1. ▲▲▲▲▲▲센터 직원 배치 운영 부적절

- 「2016년 인천광역시 노인문화센터 운영지침」에 7. 시설 및 직제기준에 의하면 종사인원은 총 7인 이내로 최소의 필수인력으로 하며 규모, 이용노인 수, 관내 노인 인구 등을 감안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러나 ▲▲▲▲▲▲센터에서는 정직원 7명 외 계약직 1명을 더 채용하여 일용잡급 과목으로 2015년 결산 기준 9,733,130원을 집행하였다.

▶▶ 처분요구 : 행정상 개선

2. 예산 편성 및 회계 관리 지도·감독 소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산을 편성할 경우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예산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5조에서는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14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실무」에 따르면 세출예산은 경비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관·항·목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 그러나 ▲▲▲▲▲▲센터에서는 2014년 프린터 구입 2건(967천원)과 2015년 코팅기 구입 등 6건(2,610천원), 총 8건(3,577천원)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재산조성비(시설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여 지출하여야 함에도 사무비(운영비, 수용비및수수료)로 편성하여 예산을 집행하였다.

또한, 사무비(운영비, 기타운영비) 성질의 직원 교육비용 및 소식지 제작비 예산을 연구조사사업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였다.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2014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실무」에 따르면 세출예산 운영 시 예산절감 노력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행사관련 기념품이나 기관선물의 구입 등은 해당 행사 운영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집행토

록 하고 업무추진비 등 소모성 경비 증가를 억제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삭감조정하며 사업추진 및 시설운영에 직접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그러나 ▲▲▲▲▲▲센터에서는 개관기념행사 개최 비용(2014년 4,087천원, 2015년 5,655천원)을 사회참여사업으로 편성하여 기념품 구입비와 중식비 등 사업추진 및 시설운영에 직접 필요한 예산이 아닌 행사성 경비에 집행하였다.
- 위 사항과 관련하여 사회복지과에서는 시설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관련 법규 또는 지침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3. ▲▲▲▲▲▲센터 화재보험 중복 가입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물, 선박 등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재무회계과에서는 우리구가 관리하고 있는 “▲▲▲▲▲▲센터”에 대한 재해복구공제(화재보험 포함)과 영조물 배상공제에 매년 가입하고 있다.
- 그러나,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보험가입의무 내용만을 안내 【보험가입 의무 관련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시행 안내(사회복지과-26604 (2014.06.05.))】 하고 ▲▲▲▲▲▲센터가 재해복구와 영조물배상 공제에 가입되어있는 내용을 안내하지 않아, ▲▲▲▲▲▲센터에서 화재보험을 중복 가입한 사실이 있다.

▶▶ 처분요구 : 행정상 시정